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계획하는 경우, 5 가지의 비자 수속 방법이 있습니다. (1)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 (2) 미국외 대사관을 통한 수속, (3) 이민국을 통한 수속, (4) K-3 배우자 비자, (5) K-1 약혼자 비자 등입니다. 가장 빠르게 수속할 수 있는 것은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 결혼청원이 보통 접수되며 신분변경시, 이민국은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 안내장을 보내고,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범죄사실 조회 등을 위해 지문을 채취,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민국은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임시 노동허가서를 발급, 그 후 부부가 함께 이민국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인터뷰가 결혼청원의 거부, 승인을 당락짓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결혼이 진정한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와 비시민권자의 범죄,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행됩니다.

결혼청원이 거부되는 경우, 항소를 할 수 있으나 범위반사항을 없애고, 케이스를 다시 잘 청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과거범죄경력이나 범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결혼인터뷰시 추방명령이 내리기도 전에 체포될 수도 있으니, 좋은 변호사를 수임하여 과거의 경력이나 오해를 이민국에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청원이 승인되는 경우,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2 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 년후 만기가 되며, 신분변경을 완전히 마치기 위해 이민국에 부가적인 청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관계가 이미 2 년이 더 된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일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는 영주권이 끝나기 90 일 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이 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서류, 2 명의 증인 진술서, 은행 공동구좌, 부부공동 소유의 부동산 계약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서 이런 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합법적인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등을 소유한 경우는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려진 오해 중에 하나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결혼할 목적이 없었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결혼으로 인해 미국에 남아 신분변경을 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이 거절 될 경우, 항소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영주권이나 여행허가서를 받기전, 당분간은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다. 해외로의 신혼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의 인간관계나 개인소유재산 등은 당분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결혼청원시 미리 준비, 또는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2 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결혼관계가 지속되어야 최종적으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조건부기간동안 결혼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거절됩니다.

2008 년 연방법원 케이스인 *Choin vs. Mukasey*, No. 0675823p (9th Cir. 2008)에서는 비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약혼자 비자로 입국, 결혼 청원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 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전 이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경우,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약혼자 비자를 취득, 법이 정한 90 일안에 결혼을 한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인터뷰 날짜까지 잡힌 상태였지만, 조건부기간 만기 5 일 앞두고 이혼, 법이 정한 2 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1986 년 이민 사기 결혼 수정안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의 입법의도를 지키기위해 조건부 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2006 년 케이스인 *Freeman vs. Conzalez*, 444 F.3d 1031 (9th Cir. 2006)에서는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갑작스런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2 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채우지 못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이혼, 폭행당한 배우자 및 어린이, 심각한 곤란 등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결혼생활 2 년동안 발생한 경우,케이스에 따라 면제(Waiver)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매년 400,000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많은 숫자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사기결혼에 대한 법의 엄격함을 잘 이해하시고, 결혼청원 수속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617) 877-3435

www.stevesuh.com